

# Welcome to Church Copyright License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가입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

귀 교회는 앞으로 1년간 CCLI에서 관리하는 약 3,000 저작권자/단체의 약 300,000곡에 대한  
정당한 사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의 문화와 예배가 더욱 자유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교회 ID 번호와 라이선스번호, 사용보고 시스템 교회 인증번호 및 만료일이 명시된 증서와 함께  
이용약관과 사용안내서를 보냅니다.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 그리고 이용에 필요한 내용과  
유용한 팁이 담겨있습니다. 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사용보고와 저작권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작권 라이선스 가입은 사회에 도덕적 귀감이 되고 기독 예술인 후원 및 풍성한 기독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됩니다.

귀 교회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일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CCLI 코리아 드림**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CCLI)**

#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퀵스타트 가이드

## CCL: Church Copyright License Quick Start Guide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하여 아래 4가지를 기억해주세요.

### 1. 변화

CCLI와 계약된 저작물의 교회 내 비영리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현재 해외 약 3,000 저작권 단체의 약 30만 곡과 국내 700 저작권자의 약 3,500곡

\*찬양정보검색<http://kr.search.ccli.com/> 에서 확인 가능

### 2. 허용 범위

- ❖ 악보의 인쇄 및 복사 (주보/찬양팀/교재/OHP)
- ❖ 예배 중 부른 찬양의 녹음 및 녹화
- ❖ 교회 내 맞춤형보집
- ❖ PPT 등 디지털 파일 생성 및 저장
- ❖ \*홈페이지 또는 공인된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예배 실황의 전송/스트리밍

\*판매, 대여 등 영리 목적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한 목적의 사용을 위해서는 직접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CD음반제작, 출판 등)

\*성가대 악보는 CCLI 라이선스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CCLI 관리 곡이라 하더라도 합창 악보는 편곡에 대한 별도의 창작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성가대 합창 악보는 출판된 악보를 사용자의 수만큼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CLI 스트리밍 라이선스는 한국지역에 한하여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의 취득과 함께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이용약관> 및 <스트리밍 라이선스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저작권 표기

PPT, 자막기 등 음악저작물의 복제물에 정확한 저작권 표시를 서식에 맞춰 기재해 주십시오.

→ 소책자 <사용보고 시스템 & 저작권 표기 상세 안내>에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 4. 사용활동 보고 (사용보고 시스템 이용)

교회의 저작물 사용활동을 보고해 주십시오.

→ 소책자 <사용보고 시스템 & 저작권 표기 상세 안내>에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신 사용통계를 바탕으로 작곡/작사자 등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전달합니다.

# 저작권 표기와 사용보고,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올바른 저작물 사용은 문화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풍성한 예배와 기독교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시작해보세요.

## 1. 라이선스 취득 사실을 공동체와 나누세요

- ❖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 사실을 알려 마음의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게시판, 주보, 소식지, 광고시간 등을 통해 공지해보세요.
- ❖ 아래의 문구를 참고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CCLI의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찬양 악보 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았으니 각종 예배 및 소규모 모임 때 악보 복사를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가악보 제외”*

## 2. 교회관리자를 임명하세요

- ❖ 교회를 대표하여 저작권과 CCLI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교육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 교회관리자는 CCLI로부터 교회 내 부서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교회 계정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 문의사항과 라이선스 갱신 등 CCLI와 지속적으로 연락합니다.

## 3. 부서 담당자들을 지정하세요

- ❖ 교회 내 정기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팀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여러 예배의 찬양팀, 영상팀, 디자인팀 등 팀마다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수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각자 속한 팀에서 직접 보고하도록 하면 교회에 부서와 저작물 사용이 많더라도 쉽게 보고가 가능합니다.

## 4. 날짜를 정하고 준비하세요

- ❖ 관련된 사람의 교육과 자료준비를 위해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담당자들이 저작권의 전반적인 내용과 실무에 적용되는 저작권 표기와 보고방법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먼저 2주에서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가져보세요.

## 5. 처음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상의하고 확인하세요

- ❖ 저작권을 표기하고 사용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을 부서담당자들과 함께하세요.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만나 어려운 점과 탐을 서로 나누면, 쉽고 자연스럽게 저작권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 ❖ 저작물을 소중히 여기며 저작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저작권의 본래 취지입니다.

위 방법을 따라보면 1~2개월 안에 내 교회 내 올바른 저작물 이용의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이용약관

## 기독교 저작권 라이선싱 인터내셔널

취득하는 권리와 제한에 대한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이용약관입니다.  
라이선스 취득은 약관에 대한 동의를 전제합니다.

### 1. 용어의 정의

- 1.1. “연회비” 본 라이선스의 취득 이전 또는 갱신을 위해 교회가 CCLI에 지불하는 교회 규모에 따라 책정된 금액
- 1.2. “저작권자 목록”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작권자와 카탈로그의 목록
- 1.3. “카탈로그” 저작권자의 소유 또는 관리에 있는 음악저작물들의 모음집 (카탈로그 내역은 <http://kr.songselect.com>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1.4. “CCLI 한국 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6-25 방주빌딩 4층” 또는 CCLI로부터 공지된 주소
- 1.5. “교회 예배”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예배, 집회 및 관련 활동 (예배, 결혼식, 장례식, 주일학교, 가정예배, 그룹모임 등)
- 1.6. “교회 규모” 여러 회차 및 유년·청년·장년부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주일예배의 평균적인 출석인원을 전부 합한 수  
\*모바일 라이선스 또는 이벤트 라이선스의 경우, 해당 기간 중 개최되는 예배 중 가장 많은 수의 출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 1.7. “사용보고” 음악저작물의 복제 활동 내역을 작성하는 양식
- 1.8. “저작물 사용활동” 2조의 권리에 따라 허용되는 교회의 음악저작물의 사용 활동
- 1.9. “라이선스” 본 이용약관이 구성하는 라이선스
- 1.10. “라이선스 기간” 라이선스 개시일로부터 1년
- 1.11. “라이선스 담당자” 교회로부터 임명되어 저작물 사용내역의 수집 및 사용보고서 제출의 책임을 담당하는 자
- 1.12.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 및/또는 관리하는 자
- 1.13. “프로그램(교회 저작권 라이선스 프로그램)” CCLI가 보장하는 비독점적인 권한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 1.14. “권리” 제 2조의 권리에 의거하여 교회에게 비독점적으로 허가되는 권리
- 1.15. “음악저작물” 인기목록의 카탈로그에 속한 예배의 사용을 위한 곡
- 1.16. 단수를 일컫는 단어에는 복수도 포함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1.17. 어느 성(性)을 일컫는 말에는 다른 모든 성(性)도 포함됩니다.
- 1.18. 자(者)를 일컫는 단어에는 회사, 동업자, 법인, 법인가관 및 비법인 협회도 포함됩니다.
- 1.19.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바를 제외하고는, 어느 조항, 전문, 별표, 부록 또는 별지를 일컫는 말은 본 이용약관의 조항, 전문, 별표, 부록 또는 별지를 (해당되는 바에 따름) 의미합니다.
- 1.20. 본 이용약관 각 조항의 표제(表題)는 단지 편의만을 위한 것이며 해석에 있어서 본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2. 권리

- 2.1. 음악저작물을 주부, 장례식, 결혼식 등의 순서지, 악보, 포스터, 질판, 및 게시판에의 복제
- 2.2. 음악저작물을 취합하여 제본 또는 제본하지 아니한 형태로 교회용 찬양집의 제작
- 2.3. 투사(投射: projection)를 위한 음악저작물의 OHP 투명필름, 슬라이드, 또는/및 디지털 저장매체로의 복제 및 사용
- 2.4. 정식출판 되지 않은 곡에 대한 예배 용도의 보필 및 합주 편곡
- 2.5. 교회 예배실황의 음악저작물 녹음 및 녹화
- 2.6. 위 2.1 ~ 2.5항과 관련한 가사의 복제가 이루어질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2.6.1. 2.1 ~ 2.4항에 따라 만든 음악저작물의 복제본 수량은 교회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 2.6.2. 제2.5항에 따라 만든 음악저작물 복제본의 수량은 교회 규모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2.6.3. 교회는 복제본의 판매가격으로 녹음물은 최대 5천원, 녹화물은 최대 1만 5천원 이하로 책정해야 함 (\*예배 결석으로 인한 [예배실황녹음/녹화의] 구매를 원하는 교인을 위한 조항입니다.)
- 2.7. 2.1 ~ 2.4항에 하는 가사의 복제를 증여 또는 대여하는 것은 교회 회중으로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어야 함 (\*상업적 목적 또는 앨범제작이 아닐 경우로 제한함)

### 3. 제한되는 권리 (허용되지 않는 권리)

- 3.1. 합창용 악보(오타보 등), 칸타타, 뮤지컬, 핸드벨 악보, 키보드 악보, 보컬 솔로 또는 연주용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출판용으로 제작된 संग가대 악보는 수량만큼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3.2. 2.1 ~ 2.4 항에 따라 제작된 복제본의 교회예배 이외 용도로의 배포
- 3.3. 2.1 ~ 2.4 항에 따라 제작된 복제본의 대여 또는 판매로 인해 수익을 얻는 것 (직접적인 지급 뿐 아니라 선물, 기부 등 간접적인 이득 포함)
- 3.4. 3.4항의 경우를 제외한 음악저작물의 가사 또는 번역의 변경 및 생성
- 3.5. 음악저작물의 연주  
(\*교회 예배에서의 연주는 비영리 공연으로 별도의 저작권 사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연례의 영역입니다.)
- 3.6. 모바일 라이선스의 경우, 교회예배 중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  
(\*모바일 라이선스 경우만 적용되며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교회는 음악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됩니다. 다만,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는 별도조항(2.6.3)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3.7. 위 3.1 ~ 3.6항에 규정된 제한 사항 외에, 본 이용약관에서 CCLI로부터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기타 모든 권리

### 4. 교회의 의무

- 4.1. 교회는 음악저작물의 가사, 멜로디, 또는 기본 특색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4.2. 교회는 복제하는 모든 음악저작물에 정확한 곡명, 크레딧 및 저작권 표시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Hallelujah)", 작사 및 작곡 by John Smith and Mary Doe  
© 1975 John Smith Music Co, ICS, ARR.  
Used By Permission, CCLI License # \_\_\_\_\_

(일반적으로 슬라이드/악보 하단에 표기함)

- 4.2.1. 교회는 이러한 정보를 CCLI 또는 저작권자를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Kr.songselect.com에서 검색을 하면 쉽게 곡명과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 4.3. CCLI의 요정이 있을 시, 교회는 라이선스에 따라 위 저작권 표시가 포함된 복제본의 사본을 14일 이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3개월 슬라이드 파일을 보관하여 주시고, 요정이 있을 경우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4.4. 교회는 저작물 사용활동을 주단위로 수집하여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정이 있을 시 사본을 CCLI에 제출해야 합니다.
- 4.5. 교회는 라이선스 담당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4.6. 교회는 라이선스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4.7. 교회는, 본 이용약관의 조건 및 의무의 위반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CCLI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5. 라이선스의 갱신

- 5.1. 라이선스의 갱신을 위해 교회는 라이선스 종료일에 앞서 갱신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5.1.1. 연회비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경우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에서 허가하는 모든 권리가 취소 또는 철회될 수 있습니다.
  - 5.1.2. CCLI는 연회비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CCLI는 과거 2년의 주기로 2~3% 범위에서 인상해왔습니다.)

### 6. 가입 해지

- 6.1. 교회가 가입의 해지를 원할 경우 교회는 30일 이전에 CCLI에 서면통보를 통해 해지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1.1. 라이선스 가입 첫 3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 행정수수료 25%를 제외한 연회비
  - 6.1.2. 3개월 이후 → 행정수수료 25% 및 남아있는 기간의 비례한 사용료를 제외한 연회비
- 6.2. 교회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회비를 미납할 경우 CCLI는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7. 일반사항

본 라이선스는 CCLI의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스트리밍 라이선스 이용약관

\*CCLI 스트리밍 라이선스는 한국지역에 한하여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의 취득과 함께 제공됩니다.

취득하는 권리와 제한에 대한 CCLI 스트리밍/팟캐스트 라이선스 이용약관입니다.  
라이선스 취득은 약관에 대한 동의를 전제합니다.

## 1. 사용허가

### 1.1 용어의 정의

- 1.1.1 팟캐스팅(Podcasting) - 교회와 교회 예배에서 공연한 곡의 녹음 또는 녹화한 음원 또는 동영상상을 무료로 공인된 웹사이트에서 팟캐스트 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권리
- 1.1.2 스트리밍 - 교회가 교회 예배에서 공연한 곡의 녹음 또는 녹화한 음원 또는 동영상상을 무료로 공인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전송) 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권리

### 1.2 사용허가된 권리의 설명

- 1.2.1 공인된 웹사이트
  - 1.2.1.1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요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사이트, 홈페이지(Home Website), 교회에서 교인들과의 소통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 또는
  - 1.2.1.2 교회 예배를 스트리밍하기위해 교회가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 1.2.2 교회는 예배 또는 유사한 활동을 하는 교회 또는 단체이며 교회 스트리밍/팟캐스트 라이선스의 이용당사자이다.
- 1.2.3 교회 예배란 교회의 영향력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교회공동체) 아래 이루어지는 예배 또는 종교적인 모임에서 교회 구성원이 회중예배로 참여하는 예배이다.
- 1.2.4 팟캐스트, 팟캐스팅 - 인종된 웹사이트로부터 개인 컴퓨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사용자된 파일을 모으고 RSS 피드에 구독하고 (또는 유사한 푸시기능의 기술) 자동적으로 미래의 팟캐스트를 받게 하는 그와 유사한 기기를 통해 전체 또는 부분 노래가 포함된 교회 예배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싱크로된 글과 고정된 사진 포함) 파일의 디지털 유통이다.
- 1.2.5 노래는 저작권자로부터 교회 스트리밍/팟캐스트 라이선스 아래 스트리밍 또는 팟캐스트하도록 승인된 음악 저작물(가사와 함께 또는 독립적인 음악)이다.
- 1.2.6 스트림, 스트리밍 - 아래의 방법을 통한 노래의 디지털 전송이다: a) 노래의 오디오 또는 비디오 적인 부분이 전송과 동시 표현되며, b) 그러한 전송이 노래의 고정 복제본 또는 잔류의 생성으로 귀결되지 않아 노래가 캡처, 저장, 복사, 저장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송이 결코 재생산, 유통, 또는 재전송이 되지 않는다.

## 2. 보유된 권리

- 이 교회 스트리밍/팟캐스트 라이선스에서 명시하여 교회에게 허여되지 않는 전체 또는 부분 권리는 전부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보유된다. 제한 없이 교회는 아래의 행동을 할 수 없다.
- 2.1 노래가 포함된 교회 예배의 스트리밍 또는 팟캐스트에 대해 과금할 수 없다.
  - 2.2 제 3의 단체에게 스트리밍 또는 팟캐스트의 권리를 주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노래로 전송하는 것
  - 2.3 이미 제작된 음원 또는 앨범을 스트리밍 또는 팟캐스트 하는 것. (아티스트와 음반사에서 판매하는 곡들)
  - 2.4 교회 라이선서 입장에 개칭한 기부를 포함한 금전적인 요구이 있는 콘서트, 컨퍼런스, 특별 행사 등의 스트리밍 또는 팟캐스팅. (예를 들어 교회에서 개최된 토요일 밤의 콘서트, 또는 교회와 상관없는 제 3의 사역 단체의 행사)
  - 2.5 교회 예배가 아닌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예배와 무관한 교육 영상, 영상 행사, 또는 특별 제작)의 스트리밍 또는 팟캐스팅

## 3. 라이선스 요금

- 3.1 라이선스 요금은 매년 지불한다
- 3.2 라이선스 갱신은 교회 스트리밍/팟캐스트 라이선스 만료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3.3 라이선스 요금의 미납되면 라이선스는 취소되고 및 부여된 모든 권리의 해지된다.
- 3.4 CCLI는 갱신시기에 서면통보와 함께 라이선스 요금을 다음해에 라이선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4. 해지

- 4.1 교회는 라이선스를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해지를 원할 경우 교회는 30일 이전에 CCL 서면통보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4.1.1 첫 3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행정수수료 25%를 제외한 요금을 환불한다. 이후에는, 행정수수료 25% 및 남아있는 기간의 비례한 사용료를 제외한 연회비를 환불한다.
- 4.2 CCLI는 아래 이유에 해당할 경우 라이선스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
  - 4.2.1 교회가 만료기간에 맞게 라이선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는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 4.2.2 교회가 교회 스트리밍/팟캐스트 라이선스를 약관을 위반하여 CCLI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해지된다.

## 5. 그 외

- 5.1 스트리밍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CCLI 교회 저작권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 5.2 스트리밍 라이선스는 CCLI의 승인 없이 교회에 의해 타교회에 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66-25 방주빌딩 4층 | T 02.3444.8745 | F 02.3444.8791  
[korea@ccli.com](mailto:korea@ccli.com) | [kr.ccli.com](http://kr.ccli.com)